

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4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정준호, 곽향기, 김성준,
김영철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강산, 박성연,
박수빈, 박승진, 박춘선,
박칠성, 성흠제, 왕정순,
유정인, 이영실, 이원형,
이종배, 임규호, 임만균,
임종국, 전병주, 최재란,
한·신, 홍국표, 황유정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생태계의 유지·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·관리하고,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꿀벌의 보호·관리 및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.
- 다.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꿀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양봉산업 육성·지원 계획,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·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·관리하고,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양봉산업 및 농업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서식처 환경을 고려하여 화밀·화분을 제공하는 밀원식물을 육성하고,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) ① 시장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처를 보존 및 관리하고, 도시공원 및 녹지, 정원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양봉농가는 과수원,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식재하여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 및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꿀벌 보호) 시장은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
2.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
3.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

제6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꿀벌 생태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
2.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축
3.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보급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방안

4.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·관리
5. 토착 밀원식물의 발굴 및 보급
6. 밀원식물 기반 도시공원 및 녹지 정책
7. 꿀벌의 생태계 보존 및 서식처 보호관리
8.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지원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양봉 관련 시설·기자재 및 양봉 산물·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
2.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3. 토종 밀원식물 도입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
4.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,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지원 및 기술개발) 시장은 양봉산업 및 꿀벌 보호 관련 연구지원 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개인·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(꿀벌보호), 제6조(지원계획수립), 제7조(지원사업), 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 및 제9조(연구지원 및 기술개발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노동공정상생정책관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·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5조	가축방역-예방약품 등 지원(붙임1)	436,712
제6조, 제7조, 제9조	서울 농산물 육성 지원(붙임2) (양봉 분야)	80,000 (10,000)
	친환경농업 활성화(붙임3)	102,300
	도시민 농업기술교육(붙임4) (양봉전문가 교육)	91,558 (13,300)

※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계분석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2024년 서울시 가축방역-예방약품 등 지원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

- 우제류(소, 사슴 등)에 대한 구제역 예방 사업
- 가금류(닭, 오리 등)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사업
- 꿀벌전염병(노제마병, 응애류, 낭충봉아부패병)에 대한 예방 사업
-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사업

○ 사업규모

- 우제류 사육현황(공원 포함) : 9개소 479마리
- 가금류 사육현황(공원 포함) : 40개소 1,986마리
- 양봉농가 : 65농가 5,000봉군
- 반려동물(개, 고양이) 광견병 예방접종 목표 : 90,000마리
- 야생동물(너구리 등)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: 74,200마리

○ 주요내용

- 구제역, AI 및 꿀벌 전염병 등 가축 방역 사업
 - 구제역, AI 차단 24시간 비상체계 확립 (동절기 특별 방역 기간 추진/ 상시방역 체계운영 /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및 방역 소독)
 - 꿀벌 전염병 예방 사업 (대상질병 : 응애류, 노제마, 낭충봉아부패병 / 추진방법 : 방역약품 지원(국비 70%, 구비 30%))
 -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단말기 장착비용 및 통신료 지원
- 광견병예방사업
 -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사업 (3개월 이상 개,고양이 90,000마리 / 연2회 실시 / 관내 인근 동물병원 방문 접종 / 백신약품 지원(국비 46%, 시비 24%, 구비 30%))
 -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백신 살포사업 (너구리 등 야생동물 74,200마리 / 연2회 실시 / 백신조달구매(국비 70%, 시비 30%))
- 소요예산 : 436,712천 원(국비 297,871천 원, 시비 138,841천 원)

[붙임 2] 2024년 서울시 서울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설명서

○ 사업대상 : 서울 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

○ 사업기간 : `04년 ~ 계속

○ 사업내용

- 서울 브랜드 농산물 : 5분야

벼분야(경북궁쌀) : 2종

화훼분야(서울꽃단지) : 1종

과수분야(수라매) : 1종

채소분야(늘싱싱한채소) : 1종

양봉분야(서울벌꿀) : 1종

○ 2024년도 예산(안) : 80,000천원

[붙임 3] 2024년 서울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`12년 ~ 계속
- 사업내용
 -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
 -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농자재 지원(친환경 병해충 방제제 등) : 35농가
 -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한 생산단계 농약안전사용지도 강화 : 1~12월
 - 미생물배양실 및 종합분석실 운영
 - 유용미생물(일반미생물 등) 배양공급 : 30,000리터
 - 종합분석실 안전운동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지원 및 작업환경 개선
 - 광역방제기 운영 : 2종
- 2024년도 예산(안) : 102,300천원

[붙임 4] 2024년 서울시 도시민 농업기술교육 사업설명서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`12년 ~ 계속
- 사업내용
 - 전원생활교육 : 8기 320명, 전원생활 희망시민대상 영농기술교육
 - 양봉전문가교육 : 1기 30명, 관내예비농업인, 신규농업인 등
- 지원대상 : 영농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등
- 2024년도 예산(안) : 91,558천원